의 안 번 호	19-116

제출년월일 : 2019. 09.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공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공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유공납세자를 선발하여 지원함으로써,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선발(안 제3조)

다. 우대 및 지원 (안 제4조)

라. 선발 등의 취소, 관리 (안 제5조~6조)

4. 주요 토의과제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19. 8. 1. ~ 8. 21. (제출된 의견 없음)

2)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 해당없음

3)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원안 동의

4)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 원안 동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공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세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세를 성실히 납부한 유공납세자를 선발하여 우대하고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성실 납세 의식을 고취시키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서울특별시세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말한다.
2. “유공납세자”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중 안정적인 세입 재정운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를 말한다.

가. 선발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

나. 최근 10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연간 2건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소득분, 재산세,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한다)를 8년간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

제3조(선발)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제14조에 따른 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 1회 유공납세자를 선발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발이 확정된 유공납세자에게 선발결과 및 우대사항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우대 및 지원)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발된 유공납세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공납세자 표창 및 격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별표1 제13호에 따른 주차요금 면제
3.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찰 등에 초청하여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4. 구 홈페이지에 명단공개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5조(선발 등의 취소)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발된 유공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공납세자의 선발을 취소하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한다.

1.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에서 탈세로 인하여 지방세를 추징한 자
2. 국세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탈세가 확정된 자
3. 지방세 체납이 확인된 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유공납세자 선발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실이 확인된 자

제6조(관리)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유공납세자의 지방세 납부액, 체납 여부 , 징수유예 여부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공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제4조(우대 및 지원)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유공납세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공납세자 표창 및 격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1 제13호에 따른 주차요금 면제
3.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찰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4. 구 홈페이지에 명단공개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추가적 비용 지불 내용 없음

나. 세입 감소 : 연평균 1억원 미만 세입 감소 예상

※ 가정 : 유공납세자 5명이 하루 최대 11시간 1급지 주차장을 1년(365일)*80% 이용시 면제 비용 77,616,000원
(1시간 : 4,800원 / 11시간(유료이용) 52,800원 / 294일 15,523200원)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구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비고
	1회 주차시 5분당	1회 주차시 5분당	
1급지	400원	400원	홍익대학교·서강대학교 주변, 신촌 등

4. 작성자 : 기획경제국 징수과 박선희 (8702)